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정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심장질환 ⑦

심부전증

-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2. 25. 선고, 92구7049 판결
- 참조조문 산재법 제9조의 6, 제9조의 9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690 판결

판결요지

평소에 아무런 지병도 없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자가 한국교원대학교에 파견근무를 명받아 대학원과정을 이수중 갑자기 한밤중에 집에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사망이 인정된다.

◆판결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이철관 1990년 3월 1일부터 대구 동부교육청 관내 남산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1993년 3월 1일부터 한국교원대학교 파견근무를 명받아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공부하여

오다가 같은 달 20일 04시 00분경 대구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의식을 잃은 모습이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후 송 중 사망하였다.

나. 이에 소외 망 이철관의 아버지인 원고는 1993년 4월 7일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월 24일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사체검안서상 불명하여 공무와의 관련성을 규명할 수 없고, 평소 업무수행내역이 다른 동료 교사나 동료 특별연수 대학원생보다 특별히 과중하여 과로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유족보상금 지급청 구에 대하여 부결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소외 망 이철관에 대한 사체검안서 상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이 불명으로 되어 있으나, 위 망인은 아무런 지병도 없었고, 평소 근무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위와 같이 갑자기 사망한 것은 위 망인의 평소 업무수행내역이 과중하여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격무로 말미암아 생긴 신폐기능부전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원의 재직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결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증거들과 갑제2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 15호증의 각 1내지 4, 제16호증의 1내지 10, 제17호증의 1내지 3, 제18호증의 1내지 64, 제19호증의 1내지 27,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황시영, 박대화의 각 증

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망 이철관은 1966년 11월 25일생으로 위 사망 당시 26년 3개월 남짓된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1990년 3월 1일부터 위 남산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5학년을, 다음해인 1991년에는 6학년을, 1992년에는 4학년을 각 담임 맡아 지도하였다.

(2) 위 망 이철관은 위 초등학교에서 주당 32시간의 위 4, 5, 6학년의 학습지도 이외에도 위 초등학교의 교기인 육상의 지도와 보이스카웃 활동을 맡게 되었고, 청소, 교통, 안전 지도 등의 각종 생활지도를 담당하여 왔는데, 1991년에는 이로 인하여 방학을 제외한 기간 보통 06시 30분에 기상하여 07시 30분에 학교로 출근하고 그 때부터 08시 50분까지는 육상부 학생들의 육상지도를, 09시 00부터 15시 00분까지는 담임학급의 교과목 지도를, 그 후 15시 30분까지는 생활지도를 그 후 17시 30분경까지는 다시 육상지도를 한 후, 19시 00분경부터 학생들의 과제를 검사와 가르칠 교과목 내용에 관한 교재 연구를 하고, 취침전 1시간 가량 영어 공부를 한 뒤 23시 00분경 잠자리에 드는 비교적 고된 일과의 생활을 하여 왔으며, 위와 같이 근무하여 위 초등학교 교사의 초과근무 일지에는 위 망인이 1990년에는 8시간, 1991년에는 1백 77시간, 1992년에는 3백 9시간을 각 초과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래 초과근무시간이 월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는 위 초과근무일지에 적힌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초과근무하였다.

(3) 위 망 이철관은 1992년 3월경부터는 일과
가 끝난 후에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하루도 빼짐없이 대구교육대학 도서관 계

명대학교 도서관 등을 다니며 수험준비를 하면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도 다음날 교과내용을 준비, 점검하는 등 교육 및 학습에 노력하였고, 그 결과 1993년 3월 1일부터 한국교원대학교에 파견근무를 명받아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다.

(4) 위 망 이철관은 위 한국교원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주당 10시간씩의 대학원 수업을 받는 외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학과 수업모형연구 등 공동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과학교육연구 세미나 발표 준비, 과학교육전공원서 번역 작업, 물리학과제 발표준비, 교육학 공부, 대학원석사과정 논문계획서 자료수집활동 등을 하면서, 그 무렵에는 이로 인하여 06시 00분경에 기상하여 책을 보다가 07시 00분경 등교하여 08시 00분경, 아침 식사를 마친 후부터 23시 00분경까지 초등교육학과 연구실, 도서관 등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귀가하는 바쁘고 고된 생활을 하고, 대학원 신입생으로서 잘 해보려는 긴장감을 가지고 위와 같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게 나왔다.

(5) 위 망 이철관은 위 남산초등학교에 초임교사로 발령 당시 몸집이 좋고 배도 약간 나온 상태인데,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1991년 5월경부터는 몸이 야위어 가고 안색도 좋지 않았고, 아침세수를 하다가 코피를 종종 흘리기도 하였으며, 1992년 6월 8일 대구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정기 건강진단에서는 아무런 지병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위 한국교원대학에 파견 근무를 할 당시에는 혈색도 창백하고 항상 피곤함을 느끼면서 마음은 공부하고 싶으나 몸이 안 따라서 항상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하는 등 동료에게 누적된 피로감에 대한 하소연을 하였다.

(6) 위 망 이철관은 1993년 3월 19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굉장히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공부를 하고, 17시 00분경 출발하여 23:00분경 대구에 있는 자택에 도착하여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인 같은 달 20일 03시 40분경 의식을 잃은 채 숨이 거칠어지고 입에서 거품이 흐르는 것이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가족들에 의해 계명대학교 부속동산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기능부전이나,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소외 망이 철관이 한국교원대학교에 과견근무를 명받아 연구 및 공부하는 것은 바로 공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망인이 26세를 갓 넘은 청년으로 평소 아무런 지병도 없는 상태에서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당시 쌓인 피곤에다가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위와 같은 공부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심폐기능부전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위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